



제 42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는 산재처리 실무 마지막 자료입니다. 한경보 회장의 특강이 회원 여러분께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제 3 장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1. 안전상조치미비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상의 조치)

- 1) 사업주는 기계, 기구 기타 설비,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추락, 붕괴,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굴착, 추락, 낙화, 붕괴, 비레 등의 장소에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안전상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이 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조치)

- 1)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흠(fume), 미스트(mist), 산소결핍공기,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나)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 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라) 계속감시·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마)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2002.12.30 신설)

- (바)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2002.12.30 개정)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해야 할 보건상의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

- 1) 사업주개념 :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 따라서 사내 협력회사 또는 건설 하도급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전상 조치미비로 처벌대상자는 협력회사 또는 하도급회사(법인)가 되며, 협력회사(법인)로부터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와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제71조(양벌 규정)에 의거 처벌 받게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무주체인 "사업주"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즉,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임(안기 68301-1224, '93.12.15)

- 2) 처벌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위반 시 행위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법인의 경우는 법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근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2. 도급인의 안전상 조치 의무

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다)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라)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2일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이 안전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5항)

- ①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 ② 기계·기구 등이 전도·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 ③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2005.10.7 개정)
- ④ 비계 또는 거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 ⑤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 ⑥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 ⑦ 엘리베이터 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 ⑧ 영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 ⑨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선박 내 또는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
- ⑩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⑪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⑫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 ⑬ 보건규칙 제16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⑭ 공중 전선에 근접한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감전이 위험이 있는 장소
- ⑮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3. 재해발생 시 처벌기준

가. 조사대상 재해선정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8조)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서 제출한 최초 요양신청서 및 요양비 청구서, 유족급여청구서를 월1회 이상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제출받아서, 이 중

- 중대재해(사망, 또는 초진 3개월 이상 부상 동시 2명 이상)
-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해에 대해 조사하여 범위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나. 구속수사기준(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

- 재해가 예견되는 충분한 징후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거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
-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미 조치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 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의 변경명령에 따른 조치불이행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때

다. 작업 중지 명령(산안법 제51조 제7항)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여겨질 때,